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】

의 안 번 호 452

2024. 6. 11. 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31. / 이정애 의원 등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기 조례로 제정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,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1조~제3조)
-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. (안 제4조~안제5조)
-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 지정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~제10조)
-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대상 감독을 규정함(안 제11조~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제정안은 「남양주시 자동차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된 자동차 정비업 지원,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제출된 안건으로
-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하여,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관리나 수리를 담당하는 정비업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
- 현재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소는 411개소가 운영중이며 관내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, 교육 등을 지원하고,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육성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 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모범사업자는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임을 시에서 보증하는 것이므로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